

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(KRF) 안 내 서

2019. 6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한국연구재단

목 차

I. 사업개요	1
1. 목적 및 내용	1
2. 지원방향	1
3. 유치대상	2
4. 유치기관 및 유치방법	2
5. 지원기간 및 규모	3
6. 선정평가	6
7. 사업추진 절차	8
II. 사업관리	8
1. 사업관리절차	8
2. 사업관리 주요내용	8
3. 주체별 역할과 책임	9
4. 신진연구자 관리 등	10
5. 사업 준수사항	11
6. 연구결과 사후 관리	11
III. 사업안내	12
1. 신청방법	12
2. 선정평가	15
3. 추진일정	17
4. 문의처	19

I. 사업개요

1 목적 및 내용

- **(사업목적)** 잠재력과 역량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체계 구축
- **(유치대상)** 해외 신진 연구자(해외 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)
 - ※ 신진연구자 : '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'의 해외 거주 외국인 연구자 및 한국인 연구자
- **(유치기관)** 정부출연(연), 국·공립(연), 대학, 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
 - 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- **(기간)** 단기적인 성과산출보다는 신진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며 **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(3년 이상, 최대 5년)**

2 지원방향

- 해외 인력이 장기간 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
- 해외 신진인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경력개발 체계 제공
- 국내 인력과 해외 신진연구자가 교류하며 개방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

3 유치대상

- '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'의 **신진 연구자**(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)
 - (유형1)**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연구자(**한국 박사학위자 포함**)
 - ※ 과제선정 이후, '14.9.1.~'19.8.31. 기간 중 취득한 박사학위 증명서 제출 필수 (미제출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)

4 유치기관 및 유치방법

- **(유치기관)**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공립연구기관,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*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부설연구소) 및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
 - 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- **(유치방법)** 국내 연구기관이 유치대상 인력을 발굴하여 과제 신청
 - ※ 국내 연구 책임자와 입국을 원하는 해외 인재의 연계를 위해 인재매칭 서비스 제공 중(연구재단 홈페이지 내 KRF사업 공지사항 참조)
 - 유치기관이 해외인력 유치 필요성, 해외 신진연구자의 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증
 - 다양한 해외 우수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성장·적용 지원프로그램, 동 사업 지원종료 후 고용·타 사업 연계 등 유치기관의 신진연구자 성장을 위한 지원 및 장기 비전 제시

5 지원기간 및 규모

- **(자격 및 요건)** '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'의 신진연구자(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)
 - ※ 한국인 연구자는 해외 거주 및 해외 연구기관(기업체 포함) 소속 필수(한국 박사학위자 지원가능)
- **(규모)** 해외인재 체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사업지원체계 운영
 - **(유형1)** 해외 고급 인재 발굴 및 안정적 체류를 위해 인건비 및 체류비 등을 지원(최대 7천만원/년, 해외 거주 연구자의 국내 유치)
 - ※ 금번 2차 사업 공모시에는 유형1만 공모 예정(유형2는 1차 공고시 선발 완료)

< KRF 지원 내역 >

구 분	지원기간	인건비	체재비	기타경비	유치기관 지원비
【유형1】 해외인재유치형 (해외 ⇒ 국내)	3~5년	최대 50백만원	최대 12백만원 (숙소 등 체류비)	최대 5백만원 (항공료, 이주비, 국내외 출장여비 등)	5백만원(정액) (전담지원인력 누리과정 등)
		최대 총 70백만원/년 지원			

- ※ 인건비는 유치기관의 산정기준에 따르고, 체재비 및 기타경비는 실비 정산
- ※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 활동비 등 직접비는 유치기관이 부담
- ※ 해외신진연구자의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한 강의 수강료 및 공인한국어능력 인증시험 응시료는 기타경비 비목에서 지원 가능(기타경비)
- ※ 참여인력의 KRF사업 연구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출장여비 및 학회 참가비 실비 지급 가능(기타경비)

① 인건비 : 최대 50백만원/년(실비)

- 주관연구기관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책정*하며, 4대보험(개인, 기관 부담금), 소득세,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
- * 국내 및 해외 유사경력자 인건비 수준, 해외신진연구자의 경력 및 보수, 역량 및 유치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책정(연구비 적정성은 평가기준에 포함되며, 선정 평가시 조정 가능)

② 체재비 : 최대 12백만원/년(실비)

- 해외 신진연구자의 숙소 등 체류 비용
- ※ 체재비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 등을 포함
- ※ 거주를 위한 숙소 지원 경비만 반영되며 생활비(utility fee 등)는 제외

③ 기타경비(상해·질병보험료, 항공료, 이주비, 출장여비, 국내학회참석비, 한국어교육비 등) : 최대 5백만원/년(실비)

- **상해·질병보험료:** 주관연구기관이 보험회사 상품 활용
- **항공료:** 신진연구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Economy Class 편도항공료(1회) 실비정산 지원
- **이주비:** 아래 지급기준 이내에서 실비정산

지 역	지 원 액
일본, 중국, 대만	500천원 이내
동남아시아	600천원 이내
인도, 서아시아, 중동	800천원 이내
북미(서부), 호주, 유럽, 러시아	1,100천원 이내
북미(중·동부),	1,300천원 이내
중남미, 아프리카	1,600천원 이내

- **출장여비:** KRF사업 과제와 관련있는 공무상 출장에 한하여 국내출장여비, 해외출장여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관련 집행기준은 주관연구기관의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

- **한국어 교육비:** 해외신진연구자의 한국어 능력 강화를 위한 강의 수강료 및 공인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

※ 항공료와 이주비는 연구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지급(국내체류자는 미지급) 또는 연차평가 결과 확정 후 지급 가능

④ **유치기관 지원비 : 5백만원(정액)**

- **전담지원인력지원비 :** 월 20만원 이상

- **누리과정지원비:** 해외신진연구자의 직계자녀 중, 유치원을 다니는 만 3~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의 보육료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음

- **기관지원 경비 :** 사업 관리 지원비

※ 유치기관 지원비 총액(5백만원/연) 이내에서 전담인력지원비는 증액(월 20만원 이상)가능하나 잔액(차액)인 기관지원경비는 증액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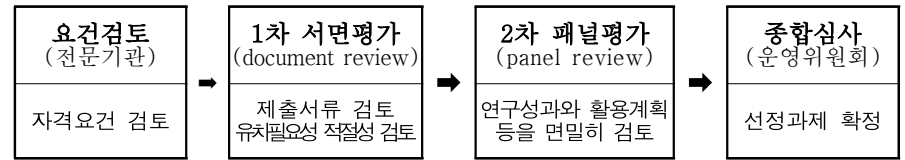
⑤ **연구활동비(직접비) : KRF 사업비 지원 불가**

- 신진연구자의 **연구활동비(직접비)**는 유치기관 매칭 또는 **연구책임자의 수행과제**에서 지원

※ 과제계획서 제출시 연구활동비 지원 계획을 포함

6 선정평가

○ 평가 절차



- **요건검토 :** 신진연구자, 유치기관 등의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검토
- **서면/패널평가 :**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신진연구자의 연구수행 역량(잠재력) 및 참여의지, 주관연구기관의 활용 및 지원방안(장기비전) 등을 집중 평가
- **종합평가 :** 지원대상 최종선정

○ 선정평가 항목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지표 성격	배점
연구계획	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과제 계획의 우수성 -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- 과제 수행 계획 및 세부프로그램의 구성·운영 -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계획의 적절성 ◦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 - 해당분야 및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인력 유치 필요성 	정성	20
해외신진연구자 역량	신진연구자의 연구실적 및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해외신진연구자의 연구실적 및 역량 - 신진연구자 대표연구실적 우수성(예, 논문편수, 특허, 대표 우수 논문이 있는가) 	정성	10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잠재적 연구역량 및 관련 분야 연구 경력(노하우) 보유 여부 - 박사 학위수여 대학 및 지도교수의 우수성 - 관련분야 경력의 우수성(학위 후 경력자) ◦ 국내 연구분야 기여가능성 및 유치필요성 - 신진연구자의 역량을 활용한 연구계획의 구체성·우수성 및 기여가능성 	정성	20
	역할 및 유치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내 연구분야 기여 및 파급 효과 - 신진연구자를 활용한 기술도입,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정도 등 	정성	15

해외신진 연구자 활용 및 지원	해외신진연구자 활용 및 성장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외신진연구자 활용계획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역량, 신진연구자의 역할 및 필요성 연구비 확보, 국내 연구인력과의 교류 등 연구 인력·장비 구축 및 교육지원 체계 여부 신진연구자 경력개발 등 성장지원체계 사업기간 내 교육 및 역량향상 등 성장지원 사업기간 종료 후 취업연계 등 지속 활용 계획 및 장기비전 	정성	20
	주관기관의 조직 및 지원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관기관의 추진 및 지원 의지 해외신진연구자 사무공간 및 생활지원 계획 자체 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한 신진연구자 지원 계획 주관연구기관의 인프라 구축 여부(전담지원인력 활용계획 등) 전담지원인력 활용 계획 외국인 전담 조직운영 여부 및 지원 계획 해외신진연구자 적응을 위한 외국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도 	정성	15
	연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건비 수준의 적절성 관련분야 인건비 현황 및 신진연구자 역량 대비 적정 인건비 수준 	정성	
계				100

※ 주요 우대 사항

- 재외한인·교포연구자 선발 우대를 위한 최소 선정쿼터(30%) 반영
- 8대 선도산업* 및 3대 전략투자** 기술분야 과제 선정 우대

* 스마트공장, 스마트팜, 스마트시티, 핀테크, 에너지신산업, 드론, 미래자동차, 바이오헬스

** 데이터경제(빅데이터/블록체인/공유경제), 인공지능(AI), 수소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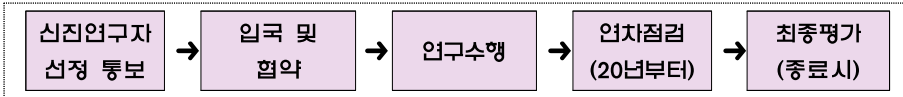
※ 과기정통부가 지정 예정인 이공계 연구중심대학(원) 과제 선정 우대

7 사업 추진 절차

구 분	추진절차	주 요 내 용	담당기관
계획수립	사업계획수립	- 세부시행계획 수립	과기정통부 한국연구 재단
↓	과제 공모	- 사업공고	
↓	과제심사 (3단계)	- 요건 심사 - (서면평가) 제출서류 검토 등 유치필요성 - (패널평가)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검토 - 종합 심사 -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운영위원회	한국연구 재단
↓	선정통보	- 주관연구기관에 선정결과 통보	
↓	유치요건 협의	- 유치기관-신진연구자 간 유치요건 협의 (급여, 입국 및 연구착수일 등 포함) - 협의결과 제출(주관연구기관→연구재단) ※ 별도 공지일까지 제출 요망	주관 연구기관
↓	계약 체결 및 입국	- 계약체결 - 합동계획서 제출 - 유치기관-신진연구자 간 계약 체결 및 입국 - 협약용 계획서 제출(주관연구기관→연구재단)	주관 연구기관
↓	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-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 체결 - 사업비(인건비, 체재비 등) 지급	한국연구 재단
↓	연구수행	- 연구수행 ※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 착수	주관연구기관 신진연구자
↓	사업관리 및 평가	- 연차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- 사업성과관리 및 신진연구자 지원 등	한국연구재단

II. 사업관리

1 사업관리 절차



2 사업관리 주요내용

- (선정통보 및 유치요건 협의) 선정 통보 후 유치기관-신진연구자 간 유치요건 최종 협의 후 협의결과 제출(유치기관→연구재단)
- (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) 신진연구자 입국 후 신진연구자와 유치기관 간 계약체결 및 협약 체결
 - ※ 협약 체결시 협약용 계획서, 신진연구자-유치기관 계약서, 신진연구자 입국 증명서(여권 등) 등 첨부
- (사업비 지급 및 연구착수) 협약 체결 후 전문기관이 사업비 일괄 지급 및 연구 착수
 - ※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입국 및 연구착수(기한 내 미 착수시 선정 취소)
- (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) 사업지침 및 연구계획서 등에 따라 연구수행
 - ※ 계획대비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, 전문기관 보고 및 승인 필요
- (연차평가) 신진연구자의 연구성과, 성실도 및 유치기관의 지원현황 등 평가(연차평가 결과 미흡시 지원중단, 차년도 협약 갱신 불가)
- (연구비 정산)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
- (결과보고 및 평가)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유치기관 및 신진연구자가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실시(전문기관)

3 주체별 역할과 책임

- 사업관리 주체별 아래의 역할과 책임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

구분	역할 및 책임
주관연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진연구자 지원 및 성과 등 전반적 사항 총괄관리 - 전담인력 지정, 신진연구자 정착 지원 (입국, 숙소, 교육, 생활여건 개선 등) - 사업포기 및 협약해약 등 발생시 사업비 회수·반납 등 - 규정에 따른 연구비 지급 및 관리 • 역량있는 해외 신진연구자 발굴·유치, 역량개발, 우수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고용 등 연계 지원 • 연구활동비(직접비) 지원
연구책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진연구자의 근태·복무 관리, 진도·성과관리 • 연구비 관리, 연구수행 전반 지도 및 관리 • 국내인력과의 공동연구 체계 및 역량 개발 지원
전문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·관리하고 홍보 및 정책지원 - 연차점검, 최종평가 및 인력/성과의 사후 관리 등

4 | 신진연구자 관리 등

- **(근무)** 신진연구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전일 근무하며 연구를 수행
- **(강의 및 연구수행)**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의 승인 하에 대학 강의(2과목 이내) 또는 KRF사업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타 R&D과제 참여 및 수행 가능(참여율 30% 이내)
- **(유급휴가)** 연 20일 이내(협약 연구기간 기준)
 - ※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근무일(휴일, 기관휴무일 제외)만 계산하며, 허용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인건비를 반납
 - ※ 지원 중단시 유급휴가 일수는 최종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
 - ※ 세부사항은 본 지침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관연구기관과 해외신진연구자와의 고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
- **(해외출장)** 연 20일 이내(협약 연구기간 기준)
 - 해외출장 누적일수가 연 20일 초과 또는 1회에 10일 초과할 경우 출장 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후 주관연구기관은 승인내역 및 출장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
 - 해외 출장 종료 후 출장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제출(출장 종료 후 7일 이내)
 - ※ 해외출장에 대해 공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고,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회수
 - ※ 세부사항은 본 지침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관연구기관과 해외신진연구자와의 고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
- **(연구수행)** 연구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, 1개월 이상 연구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회수
 - ※ 출산, 병가 등 기타 불가피한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간 휴직 가능하며 출산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휴직 가능

5 | 사업 준수사항

-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약 해약 가능
 - 국가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
 -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,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
 -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 - 주관연구기관 또는 신진연구자의 과제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주관연구기관이나 해외신진연구자가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
 - 출산, 병가 등 기타 불가피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, 해외신진연구자가 1개월 이상 연구수행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협약 해약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 회수 의무가 있음
 - ※ 주관연구기관 또는 신진연구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지원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 가능

6 | 연구결과 사후 관리

- 사업으로부터 얻은 지적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의 권리는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의 규정 혹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
- 연구성과 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
 - ※ 국문표기 :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해외우수신진연구자지원사업(KRF, Korea Research Fellowship)의 연구임(No.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)
 - ※ 영문표기 :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ellowship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(grant number)

Ⅲ. 사업안내

1 신청방법

- 주관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(ernd.nrf.re.kr)



유치를 원하는 해외신진연구자를 신청기관(연구책임자)이 직접 발굴

과제, 해외신진연구자 관련자료 준비 및 협의

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신청



- 제출서류 ※ 제출서류 양식은 별도 공지 예정

과제 신청 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신청서(이력서, 추천서, 기타 증명서 포함) -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동동의서 - 연구윤리준수 협약서
과제 선정이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진연구자 최종학위증명서 -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의지 협약서

○ 신청자격

구분	자 격
주관연구기관	정부출연연구기관, 국공립연구기관,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(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)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연구책임자	주관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,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(기업부설연구소) 이상인 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· 사업 운영기간(5년) 동안 재직이 보장되고 과제수행에 전념이 가능 ※ 「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에 따른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
해외신진연구자	· ‘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’의 외국인연구자 · ‘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’의 해외 거주 한국인 연구자

FAQ

- Q 국내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 신진연구자도 유치대상인가요?
A 한국국적 연구자의 경우 해외 체류중인 경우(유형1)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Q 강의를 위한 해외신진연구자 유치도 가능한가요?
A 본 사업은 R&D사업으로 강의만 전담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다만, 사업목적에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치기관장과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에 2과목이 내의 강의 또는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는 가능합니다.
- Q 대기업 부설연구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A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된 기업부설연구소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.
- Q 박사학위가 있어도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?
A 박사학위 취득 전이거나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연구자는 신진연구자로 볼 수 없어 요건심사 탈락대상입니다.
- Q 박사학위 및 재직(경력) 증명서, 추천서 등이 현지어(독일어, 프랑스어 등)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제출 신청이 가능한지요?
A 증명서 및 추천서는 한국어와 영어만 인정이 되며, 부득이하게 현지 언어로 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들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및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Q 해외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나요?

A 본 사업은 국내에서 풀타임 근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외현지의 공동연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Q 사업신청을 해외신진연구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?

A 사업신청 및 관련 보고서(입국, 활용변경, 결과보고 등) 등의 제출은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합니다. 신청서 상의 해외신진연구자가 직접 작성하는 부분 등을 연구책임자가 취합 및 확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.

Q 단기(3~6개월)참여가 가능한가요?

A 본 사업은 5년 이하의 장기적 체류 지원사업으로 단기(3~6개월) 지원은 불가합니다.

Q 주관기관확약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?

A KRF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라 해외우수신진연구자를 유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기관의 직인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.

Q 추천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?

A 추천서는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 신진연구자와 이전에 함께 일했던 곳의 책임자나 지도교수께 받으셔서 제출하면 됩니다.

Q 전담인력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?

A 본 사업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연구원, 조교, 산단 직원, 연구소 직원 등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. 유형1의 경우 전담인력은 월 20만원 이상(주관기관 책정)을 지원받게됩니다. 다만 학생 등의 경우 정부지급연구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예 : 박사과정 지급기준 250만원/월) 신청서의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기입란 밑부분 실무담당자에 기입하시고,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전담인력 부분에도 동의 및 기입 하셔야 합니다.

- 해외신진연구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 과제계획서는 한글로만 작성해야 하나요?

A 과제계획서는 통상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섹션2의 해외신진연구자 기입사항은 영어로 작성 가능합니다.

Q 3책 5공 대상 사업인가요?

A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3책 5공 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.

Q 신진연구자가 산업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, 별도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?

A 국가 R&D 과제가 아닌, 주관기관 자체 과제(기관고유사업) 또는 산업체(기업체) 과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, 별도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.

2 선정평가

□ 선정심사

- 신청과제와 연구책임자 및 해외신진연구자를 동시에 심사하며, 선정 평가(서면/패널) 통과 과제 중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과제 선정
- 심사절차 : 요건검토 → 선정평가(서면/패널) → 종합평가

제1단계 : 요건검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사주체 :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 ○ 심사내용 : 유치기관, 신진연구자 등의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검토



제2단계 : 서면평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주체 :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“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” ○ 심사대상 : 과제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○ 심사 방법 : 서면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진연구자 유치 필요성, 주관기관의 지원방안 등을 집중 평가



제3단계 : 패널평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주체 :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“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” ○ 심사대상 : 연구성과와 활용계획 검토 및 토론 ○ 심사 방법 : 패널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진연구자의 연구성과와 주관연구기관의 활용계획 등을 집중 평가



제4단계 : 종합심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주체 : 각 분야별 선정평가위원장, 기업계, 연구계, 과기정통부,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 등으로 구성된 “운영위원회” ○ 심사방법 :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추천된 과제를 검토하여 선정 과제 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비, 유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

□ 선정결과 통보

- 선정 결과를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이 주관연구기관, 연구책임자에게 통보
- 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연구통합관리시스템(ERND)에 게재

□ 선정 연구기간 및 선정금액에 따른 예산 조정

- 연구기간 (예시 : 19년도 선정 과제, 9월 연구착수시)
 - ① 1차년도(19년) : 19.9월 ~ 19. 12. 31(최대 4개월)
 - ② 2차년도(20년) : 20.1.1 ~ 20. 12. 31(12개월)
 - ③ 3차년도(21년) : 21.1.1 ~ 21. 12. 31(12개월)
 - ④ 4차년도(22년) : 22.1.1 ~ 22. 12. 31(12개월)
 - ⑤ 5차년도(23년) : 23.1.1 ~ 23. 12. 31(12개월)
- 연차별 연구비 예산 조정
 - 1차년도(19년)의 경우 12개월 기준 7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 예정
 - * 19년 협약 연구비 : 70백만원*4개월/12개월 = 약 23.3백만원 내의
 - * 19년 이후 연구비 : 70백만원(12개월분)
 - ※ 단 연도별 중간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유치 협의서 제출

-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외우수신진연구자와 선정내용(연구지원비 지급내역, 연구기간 등)과 입국시기(과제 착수시기), 해외 연구자 서약서(사업관리운영지침 준수 등)을 협의하여 및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협의결과를 선정통보 후 공문발송
 - ※ 타 R&D과제에 제시한 연구계획 과 중복성이 없이 과제 계획서 수정·보완 필요 (출처, 참고논문/자료 제시, 표절 이슈 없도록 동일문장 중복성 없이 수정 등)

FAQ

Q 예산 신청시 시스템에 인건비와 간접비는 어떻게 입력 하나요?(예산 비목)

A 본 사업의 사업비는 유형1의 경우 인건비, 체재비, 기타경비, 유치기관지원비 총 4가지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(유형2는 인건비만으로 구성). 사업신청서 제출, 협약용계획서 제출 등 예산 입력시 시스템 상에는 인건비, 연구활동비, 간접비의 3가지 비목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KRF사업 비목과 ernd 시스템 상 입력하는 사업비 비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비목		ernd 비목 편성	비고
비목명	세부비목		
인건비	신진연구자 인건비	인건비	-
체재비	체재비	직접비 - 연구활동비	시스템 상으로는 체재비+기타경비 = 연구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으나, 체재비·보험료·항공료·이사비 등 각 사업 관리운영지침 상의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 (통상적인 연구활동비와 다름에 유의)
기타경비	보험료		
	항공료		
	이사비		
	출장여비		
	국내학회참석비		
	한국어교육비		
유치기관 지원비	전담인력지원비	간접비	-
	누리과정지원비		
	기관간접비		

3 | 추진 일정

일 정	추진내용
'19. 6. 14.	2019년도 제2차 사업 공고
'19. 7. 31.	사업계획서 접수마감(18:00 마감시간 엄수)
'19. 8. 1.	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(18:00 마감시간 엄수)
'19. 8월	선정평가(서면/패널평가) 및 종합심사
'19. 9월 초	최종선정

※ 동 사업안내서는 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므로 변경가능하며, 정확한 내용은 사업운영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따름

4 | 문의처

【 문의처 】	
사업문의	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☎ (국/영문) 02-3460-5647, 5624 / E-mail : bpkrf@nrf.re.kr ※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.
온라인 접수문의	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(콜센터) ☎ 1544-6118